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서영교·강준현·허 영

장경태 • 윤준병 • 한정애

강훈식 • 이해식 • 김교흥

김영호 · 김성환 · 임호선

장철민 • 민병덕 • 김주영

임오경 · 강선우 · 복기왕

송옥주 • 맹성규 • 김병기

송재봉 • 박은정 • 이원택

박희승 • 위성곤 • 박해철

강경숙 • 이재강 • 이개호

이훈기 · 강유정 · 백승아

모경종 • 김민석 • 김동아

김성회·한창민·김 유

황정아 • 정진욱 의원

(4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 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 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편제1장제2절에 제10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 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 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 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 한 대우를 한 경우
 -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

할 수 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못한다.
- ①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

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 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법 시행 전에 제1004조의2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
	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
	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
	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
	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
	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u>한정한다)</u>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
	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
	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
	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
	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

- 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있다.
-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

 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 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 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 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 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 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 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 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